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19 선고 2019가단119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론 종결2021. 12. 22.

판결 선고2022. 1. 19.

주 문

1. 가.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재산분할)을 1/2 지분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0. 26.자 접수 제12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사이에서 2018.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0. 26. 접수 제12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와 B 사이에 2018.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1/2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0. 26. 접수 제12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위하여 한도금액 15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5. 6. 23.부터 2017. 6. 22.까지,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지급원리금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 등)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는 약정(약정 제12조) 등의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대표이사 B, D는 위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 2015. 6. 23. 보증원금 7억 9,200만 원, 보증기한 2015. 6. 23.부터 2016. 6.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최종적으로 보증원금 7억 400만 원, 보증기한 2019. 6. 21.까지로 변경,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2) 2015. 7. 21. 보증원금 7억 2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21.부터 2016. 7.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를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하였다.

나. C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차 보증을 담보로 2015. 6. 29. 8억 8,000만 원, 2차 보증을 담보로 2015. 7. 21. 7억 8,000만 원을 각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C이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68호 회생절차신청(2019. 5. 15. 폐지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9. 3. 13. 중소기업은행에 1차 보증

대출원리금 717,834,057원, 2차 보증 대출원리금 636,417,737원을 각 지급하여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131,1999원을 위 1차 보증 대위변제금에, 2,314,520원을 2차 보증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으며, 대위변제 당일날 위 약정 12조에 따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669원이고, 원고가 위 각 보증으로 인하여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2,723,574원이다.1) 다. 피고는 2001. 7. 7. B와 혼인하였다가 2018. 7. 20. 이혼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100184호)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항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와 B은 이혼한다.
2. B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 가.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B 명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되, B은 채무인수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 다. B 명의 C 주식 45,500주는 B 단독 소유로 한다.
4. 기타 보험, 예금채권 등 피고와 B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에 관하여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 라. 피고는 2018. 10. 26.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0. 26. 접수 제1214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주위적으로 B은 C이 회생신청에 임박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8. 10. 26. 실질적으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B에게 원물반환하여야 하며2),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B과 피고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부분은 상당성을

초과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1/2 지분을 B에게 원물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18. 10. 26.에는 이미 B이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1, 2차 보증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황이었고,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무렵인 2018. 11. 5. C의 순자산은 채무가 자산을 16억 원가량 초과한 상태로 특히 2017년 사업손실이 38억 원 가량에 달하여 회사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증사고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결국 C은 2018. 11. 29. 회생신청을 하는 바람에 원고는 2019. 3. 13. 1, 2차 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B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1,354,584,318원(=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 717,702,858원 +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 634,157,217원 + 확정손해액 669원 + 대지급금잔액 2,723,574원) 및 그 중 1,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합계금 1,351,860,075원(717,702,858 + 634,157,217)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3. 13.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B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과 피고 사이의 2018. 10. 26.자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혼과 관련 없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7호증(14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혼조정에 따라 B로부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혼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이혼조정 당시 B에게는 가치가 없는 C 주식 45,500주(0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가 별도로 보유하는 자산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 당시 가액은 270,000,000원이고, 근저당 채무액은 70,000,000원³⁾ 이므로, 결국 B과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인 순재산 합계액은 2억 원인데, 피고와 B이 2001. 7. 7. 혼인하여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둔 자녀의 나이와 추후 양육 상황(F생으로, 이혼 당시에는 만 17세로 피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 등을 감안할 때 B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이혼 당시 부부공동 순재산 합계액 2억 원 중 피고의 몫은 1억 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결과 실제로 분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액은 2억 원(당시 시가 2억 7,000만 원 - 피담보채무액 7,000만 원)이었고, B는 가치가 0원인 C 주식만을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B로부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재산분할이라 봄이 타당한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에서 본 이혼조정 당시 B의 자산 상황, C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의 증감은 원물반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갑 제8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초 2008. 10. 2. B를 채무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2009. 10. 26. 변경),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혼 조정 당시에는 위 근저당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피고가 이를 면책적 인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 피담보채무 일부를 상환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사해행위 전 후로 변동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원물반환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3)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2018.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재산분할)은 1/2 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0.

26.자 접수 제12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원정

별지

- 1) 위 총당 내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원고가 2021.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주위적 청구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별개의 주위적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 3) 근저당 채무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